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29
----------	-------

발의연월일 : 2026. 1. 19.

발 의 자 : 유동수 · 김남근 · 박선원
이인영 · 강준현 · 민병덕
한정애 · 박민규 · 김교홍
노종면 · 허종식 · 박찬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 다양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고, 기존 규제를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개선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후 감사나 징계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소극적이게 되어 현장에서 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

개선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적극행정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제34조제3항, 제37조제1항 등).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하 “공론화”라 한다)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종합·정리하고 의결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에 권고안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제9조에”를 “제9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조제2항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그 권고안
제34조제3항 중 “의뢰할 수 있다”를 “의뢰하거나, 사회적 갈등 요소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불리한”을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그 밖의 불리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견 수렴) (생 략)	제9조(의견 수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u>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 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를 신 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다 양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광범 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이하 “공론화”라 한다)을 공정 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 하여 한시적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u>
<u><신 설></u>	<u>③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은 해 당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u><신 설></u>	<u>④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결 과를 종합·정리하고 의결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여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 심사에 권고안을 반영하도록</u>

<신 설>

제10조(심사 요청) ① (생 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 략)

3.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신 설>

③ (생 략)

제34조(규제 개선 점검·평가)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심사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제9조제1항에-----

4. 제9조제2항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그 권고안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규제 개선 점검·평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문기관 등에 제도·기반연구 또는 여론조사를 <u>의뢰할 수 있다.</u> ④ (생략)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u>불리한</u>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생략)	----- -----<u>의뢰하거나, 사회적 갈등 요소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u>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 ----- ----- ----- ----- -----<u>「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그 밖의 불리한</u>----- -----. ② (현행과 같음)
---	---